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0. 7. 7.(화)	담당자	십대여성인권센터 권주리 사무국장 02-6348-1318 010-8233-1318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8길 9-1 은혜빌딩 6.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hanmail.net

아! 대한민국 법원이여!!!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고 석방한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상화폐를 받고 2년 8개월동안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 세계 38개국 128만명에게 유통·판매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부추기기까지 한 손정우에 대한 미 법무부의 강제 송환 요청을 불허하고 석방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 평

1. 대한민국 법원은 손정우 송환 요청 불허를 통해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가?

2020. 7. 6.(월) 오전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손정우는 즉시 석방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을 열고, 만 하루도 되지 않은 현재(7월 7일 새벽 5시) 263,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 8월 5일이라는 점에서 이 청원에 참여할 국민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고 한 보도를 볼 때,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과 열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재판부로 하여금 수많은 국민들의 열망과 맞서게 될 지도 모르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한 것일까?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된 재판부의 발언을 통해 재판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재판부가 최대의 성범죄자 손정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손정우에 대한 송환요구 불허결정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미 법무부가 요청한 범죄인 인도제도는 이 사건 전에도 국가간 행해졌던 제도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결국 재판부의 발언으로 유추해 보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손정우가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 하나를 형사처벌 못해서 미국으로까지 보내야 하다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형벌이 큰 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터인데, 그럴 때마다 범죄자를 외국 송환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비록 국민들의 열망이 큰 사안임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재판부에 묻는다. 만약 이러한 유추가 사실이라면, 손정우에 대한 미 법무부 송환요구 불허를 통해 대한민국 법원이 지키고자 한 것은 정의의 실현이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원의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과언은 아닌 듯 하다.

2. 전국민적 저항은 대한민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다. 그 결과의 책임은 오롯이 대한민국 법원이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에 대한 미 법무부의 송환 요구에 부응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은 사대주의도, 주권국가를 포기하라는 의미도 아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공공연히 유포·판매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벌어지는 그루밍,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 그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하루에도 보도되는 성범죄가 십여건에 달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성범죄자를 찾지 못하고, 찾으려는 의지도 없었고, 기소도 하지 않았으며, 기소되었다 하여도 늘상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쳐왔다. 그러던 중 32개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2018년 손정우를 체포할 수 있었지만, 2019년 미법무부가 공조수사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손정우의 존재조차 몰랐다. 세계최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20대 초반 청년이라는 사실과 유통·소지하

여 검거된 300여명의 이용자중 200여명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분노와 공포, 부끄러움 속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똑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한민국에서는 1심 집행유예와 2심에서야 겨우 1년6개월 실형을 받았을 뿐인 범죄가 미국에서는 30년이상, 더 나아가 각 범죄에 따라 형량을 합쳐 1000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은 대한민국 국민을 각성시키기에 충분한 사태였다. 이후 이어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갓갓, 워치맨 등의 성착취 범죄자들의 연이은 검거와 500만명에 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무엇을 배웠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법원은 부끄러워 했어야 한다. 주권국가임에도 자국의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지 못하여왔고, 법의 부재와 가벼운 형량으로 국민 정서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수준으로 일관해왔던 관행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이동하고 발전하는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그러한 방식으로 실추된 체면과 자존심을 다시 세워나가고 국민의 신뢰를 새롭게 얻어내었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대립하는 방법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했으니, 따라서 전국민적 저항은 대한민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며, 그 결과의 책임은 오롯이 대한민국 법원이 져야 할 것이다.

3. 더 우려되는 점은 대한민국이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세계최대 규모의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 법무부의 송환 요청 불허 결정 이후 환호하는 성범죄자들과 절망하는 국민들로 나눠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가? 범망을 피해 교묘하고 기술적으로 범죄가 가능한 디지털성범죄는 현행 수사 기술적 측면에서도 찾아내기도 어렵고, 법률 상으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는 전 세계의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성착취 범죄자들의 도피처, 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재판부의 자주권 행사'의 차원이 아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부추기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국제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송환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대한민국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적 저항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